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65-0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3. 8. 21(수) 14~17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ogram

프로그램

• 일시 : 2013. 8. 21. (수)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별관

시 간	내 용	
	사 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14:00~14:05	**개 회**	
14:05~14:45	**주 제 발 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발표자 :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16:00	**지 정 토 론**	토론자 :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장준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6:00~16:10	**휴 식**	
16:10~17:00	**종 합 토 론**	
17:00~	**폐 회**	

Contents

목 차

▣ 주제발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 1
발표 :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토론 : 가족관계등록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 19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문 / 37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토론문 / 41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우리의 무심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 51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 63
장준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Ⅰ. 증명서의 기록과 공시에 관한 문제

1.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와 공시의 구별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 상태(혼인여부 등)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 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친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부부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만이 공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개인의 신분 및 친족에 관한 사항을 전부 공시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필요한 신분관계의 증명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개인의 신분 및 친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분관계를 공시한다는 신분등록제도 본래의 취지는 전연 훼손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예에서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부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상태와 배우자만을 증명서에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경우에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 전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국가가 이와 같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국가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익이 될 것은 없다(불필요한 신분관계정보의 공시로 개인이 안정이 흔들

리고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실제 생활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신분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그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시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현재 신분상태 뿐만 아니라 과거의 변동사항까지도 모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제1항. 다만 2009년 12월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2월 30일부터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제15조 제2항). 그런데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이라는 취지가 표시되어(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의2 제2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하게 되어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 제7항), 발급 당시의 상태만 나타나며 과거의 사항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표시된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 제6항).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거의 신분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것(예컨대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혼인, 이혼 사항. 기본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姓·本의 변경, 性의 전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결정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분관계증명서에 현재의 상태(발급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독일신분등록법은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신분등록법 제56조 제2항), 과거의 변동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즉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변동사항까지 표시하는 증명서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취학이나 취직을 위하여 연령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의 상태(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등)만을 공시한 기본증명서만으로 충분하고, 과거의 신분변동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또한 직장에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현재의 혼인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과거의 이혼사실까지 함께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3.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

(1)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가족상태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예외: 사망), 증명의 목적을 넘는 불필요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로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부부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배우자 이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친자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와 해당 자녀의 친자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와 모든 자녀의 친자관계를 일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 갑이 자녀 을의 보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갑과 을 사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갑과 을이 친자관계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충분하며, 그 외의 가족관계까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해 주는 친자관계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상속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별적인 친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위의 예에서 어머니 갑에게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병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갑에게 을과 성(姓)이 다른 자녀 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그와 같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혼인 외의 자녀나 전혼 중의 자녀를 제외하고 작성한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증명서에 일부사항에 관한 증명이라는 것이 표시되므로,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 중 일부를 숨긴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2)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어차피 명칭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민법(제779조)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임의로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형제자매도 포함시키지 않은 증명서에 과연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

확한 명칭의 사용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가,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필요한 우려와 오해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계부모와 계자녀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또는 양부모)와 그 자녀만을 '가족'으로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관계가 가족의 전형인 것처럼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그 실체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가 표시되는데, 이는 결국 친자관계의 증명에 관한 것이며, 본인의 배우자가 표시되는 것은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굳이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독일도 2007년 신분등록법개정을 통하여 가족부(Familienbuch)를 폐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의 신분과 친족·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다(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도 어려움 없이 상속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편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점을 인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존속시키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용되는 경우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을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7항(시행일: 2014년 7월 31일)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필요성은 더 줄었다고 볼 수 있다(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 전부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4. 개정방향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따른 증명서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2종으로 나누어 발급하도록 한다.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상태만이 나타나도록 하고, 과거의 변동사항은 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으로 한다. 상세증명서에도 모든 사항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이 필요로 하는 증명사항(예컨대 미성년자 갑의 친권자)을 신청서에 표기하여 제출하면, 그 사항만이 표시된 상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이 경우, 미성년자 갑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친권자만이 기록된 상세증명서가 발급된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을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상세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가 표시되는 것으로 한다(즉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다). 일반증명서에는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부 또는 모와 모든 자녀와의 관계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자녀(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A가 자녀 B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신청서에 B의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A와 B의 친자관계만이 기록된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남인순의원안 제15조의2에 의하면 일부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 기초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자관계증명서의 기초사항증명서는 전혼중의 자녀나 혼인외의 자녀를 제외하고 작성한다. 이에 따르면 만일 어머니 A가 혼인외의 자녀 B와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혼인중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된 '전부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자관계증명서의 기초사항증명서에서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혼인외의 자녀와 전혼중의 자녀를 제외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증명하는 것은 현행 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미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다(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6호 제10조).

그리고 위와 같이 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게 될 경우 일반증명서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상세증명서는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Ⅱ. 출생신고(또는 출생등록)와 친생부모(미혼모)의 익명성 보장

1.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논쟁의 촉발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우리사회에서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와 출생신고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미혼모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생모들이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와 같이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한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하여 출생신고를 거치지 않고 입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자녀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예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더라도 출생신고 후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으므로, 친생모의 사생활도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2. 출생신고와 영아유기의 인과관계

우선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에 관한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되므로, 자신에 관한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친생모들이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베이비박스와 같은 시설이 불가피하고, 입양법도 재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평가해 본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더라도 출생신고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제7조에서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입양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입양신고는 당연히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입양 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개정 입양특례법과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구별되는 큰 차이점은 입양신고제가 입양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입양의 허가여부를 심판하는 입양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입양될 아동의 출생신고를 거치지 않고 기아로 처리하여 입양을 시키거나(국외입양)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을 인도받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국내입양)이 관행상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전에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입양방식에 일종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따라서 "개정 입양특례법이 입양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정법의 문제점으로 "출생신고의 의무화"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입양허가제의 도입"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개정법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아유기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알면서도 입양허가제의 도입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출생신고의 문제로 변질시켜 쟁점화하였다면 이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출생등록제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가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에 대해서 출생 직후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입양된 자녀도 후에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한다고 해서 이러한 기대

가 반드시 충족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신분등록법에 의하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제18조-제20조). 그런데 독일에는 1999년부터 이른바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독일 전역에 약 100개소의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130개의 병원에서는 익명의 출산이 가능하다("익명의 출산"이란 친생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에서는 약 1000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거나 병원에서 친생부모의 익명하에 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이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아로 처리되어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영아살해나 영아유기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된 베이비박스나 익명의 출산을 보장하는 병원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Entwurf ein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지난 7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익명(가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친생모의 가명만이 기록되므로, 친생모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따라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보아서는 친생모를 알 수 없다). 친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는 별도의 봉투에 밀봉되어 국가기관에서 보존되며, 자녀는 16세가 되면 그 봉투에 담긴 친생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친생모는 자녀가 15세가 되면(즉 자녀가 친생모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기 1년 전부터)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비밀(익명성) 유지에 관한 부모의 이익이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친생모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민법도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사) 등에 대하여 3일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55조, 제56조).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익명의 출산이 합법화되어 있어서(프랑스민법 제326조, 제341조) 친생모는 자신의 신상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이를 남겨둔 채 병원을 떠날 수 있다(프랑스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에 공공의료시설이

나 개인병원에 입원하여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입원비와 출산비는 전액 사회보조금으로 지출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산모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기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태어난 자녀는 친생모의 입양 승낙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국가의 후견을 받게 되며, 2개월이 경과하면 입양절차를 밟게 된다. 이 2개월의 기간 동안 친생모는 입양의 승낙을 철회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익명의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루어지지만 친생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기록되지 않는다(프랑스민법 제57조 제1항. 다만 병원에서는 친생모에 대하여 본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밀봉된 봉투를 아이에게 남길 것을 권유한다). 오늘날에도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500에서 600명의 아동이 친생모의 익명하에 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익명출산으로 태어나 친생부모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에서도 프랑스와 같이 익명의 출산이 합법화되어 있다).

외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출생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아동에 대해서 빠짐없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친생부모의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현재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미혼모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발달하여 혼인외의 출산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사회(오늘날 독일에서 혼인외의 자의 출생비율은 30%에 이르며, 프랑스에서는 45%에 이르고 있다)에서도 익명의 출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사회에서 익명의 출산을 보장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는가이다. 아래에서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첫째,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에 관한 정보가 전혀 남지 않아서 친생모의 익명성은 완벽하게 보장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이용하여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우선 베이비박스는 미혼모 등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친생모가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출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임신기간 동안 출산, 입양, 양육(친생모에 의한 양육 가능성) 등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극도로 곤경에 처한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최후의 선택으로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고립된 임신과 출산과정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 채 베이비박스를 통하여 친생모와 아기가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친생모를 위해서도 아기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남지 않으므로, 자녀의 "자기 뿌리를 알 권리"는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둘째, 프랑스와 같이 익명의 출산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출산, 입양, 양육(친생모에 의한 양육)에 대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 보다 훨씬 우수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이런 이유에서 프랑스에는 베이비박스가 없다). 임신한 여성은 아무런 부담 없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으므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기의 뿌리를 알 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지금도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익명의 출산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익명 출산'을 폐지하라는 시위를 한다고 한다).

셋째, 프랑스와 같이 익명의 출산을 보장하지만, 자녀가 후에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 방법이다. 독일에서 최근에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의 요구와 자녀의 "자기의 뿌리를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어느 한쪽을 완전히 보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쪽의 이익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현실과 친생모 및 자녀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본다면, 위에서 본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방법을 기본적인 개정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대안

(1) 외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출생신고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모든 아동에 대하여 빠짐없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게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제도만이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출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와 같이 '홀로 하는 출산(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출산)'의 경우 영아유기(또는 살해) 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했을 때부터 익명(가명)으로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담은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의료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출산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입양의 가능성과 그 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병원과 연계하여 임신한 여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가명)으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역시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담과 지원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사회적으로 동반하는 출산"이 이루어질 때 베이비박스와 같은 시설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위와 같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우선 출생신고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되(이렇게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된다), 친생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친생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는 결국 친생모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친생모의 신상에 관한 기록이 외부에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자녀가 입양이 되기 전에도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입양된 자녀가 파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일단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기록되고, 친양자 입양이 되면 더 이상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계속해서 자녀의 기록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되었던 자녀가 파양되는 경우에는 친생모와의 친자관계가 부활하므로,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다시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친생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출생에 관한 기록이 처음부터 외부에 공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친생모에 관한 정보가 차단되는 경우에는 입양된 자녀가 후에 성년자가 되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더라도 친생모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나타나지 않는다(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된 양자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부모도 친양자 입양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차단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양자가 성년이 되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더라도 '마치 친양자 입양의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기록이 없는 증명서가 발급된다(독일신분등록법 제64조 참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성년이 되면(즉 19세가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친양자는 누구나 성년이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친생모를 찾아내어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친생모가 자녀를 입양을 시킨 후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출현에 의해서 가정이 파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성년에 이른 친양자가 아무 제한 없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이러한 가능성을 안다면 어느 미혼모도 선뜻 출생신고를 한 후 자녀를 입양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모에 대한 기록이나 친양자 입양 기록의 차단을 신청했던 사람은 차단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기록 차단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후에는 관련 기록의 공개가 가능하게 된다(당사자는 일시적인 차단의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해서만 차단이 해제되고 그 후에는 관련 기록에 대한 접근이 다시 차단된다). 차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은 동안에도 차단된 기록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단된 기록이 현출되어 있는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자의 유전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친생모를 찾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나 양자 본인은 친생모에 대한 기록이 차단되어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법원은 허가심판을 할 때 친생모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친생모가 입양된 자녀를 위해서 골수기증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진술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출생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관련 정보의 공개를 허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할 경우 출생신고를 거쳐 친양자 입양을 하더라도 친생모의 익명성이나 입양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친생모에 관한 기록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으나 보존은 되어 있으므로, 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녀의 '자기 뿌리를 알 권리'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입법은 충돌하는 여러 가지 이익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3) 출생신고에 의해서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과는 별도로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에서도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제36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 역시 '양자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요구(법익)를 절충하여 마련한 것이다. 출생신고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정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현재의 출생신고제를 보완하여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아이를 출산한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제도화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미혼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고 더욱 음지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리고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고 베이비박스 등에 영아를 유기하는 경향이 확산될 경우에는 결국 친생모에 대한 정보가 아무 것도 남지 않아서 후에 자녀가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자녀의 "자기 뿌리를 알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더욱 희박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출생신고제를 유지하든 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

로 제도를 강화하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미혼모)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 동안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아유기나 베이비박스 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신한 여성(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법에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지정토론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장준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가족관계등록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Ⅰ. 가족관계등록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1. 사례를 통해서 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례 1

○ 누구나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기재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그러나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미혼모의 경우엔 출산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종료 후엔 자녀에 대한 기록은 말소하고 있으나 입양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입양 되었다가 파양되는 경우 자녀 기록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 미혼모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무 때, 아무한테나 아웃팅됨으로써 사생활이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사례 2

○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아동이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조차도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부모와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부모와 완전한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그 공시와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수적으

로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의외로 쉽게 접하게 되는 증명서일 수 있다.

○ 따라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상의 정보공개에 있어 친부모의 동의 절차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입양특례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 상충되는 지점에 대한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아울러 전반적인 개정이 시급하다.

3) 사례 3

○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가 부 또는 모로 기재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증명을 요하지 않거나 알 필요가 없는 가족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드러난다. 혈연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원칙하에 정작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 이혼한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와 재혼한 경우,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재혼 전 가정에서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로 기재된다(사망시도 마찬가지). 재혼가정에서의 자녀와 20년을 동거하며 양육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자녀로 기재되지 않는다.

4) 사례 4

○ 끈끈한 가족관계를 맺으며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이나 여동생(형제·자매)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가족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범위 또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라 할 수 없다.

○ 형제자매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국가나 법으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도 있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 '가족'단위로 묶어서 신분증명을 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다소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나, 미혼 한부모들은 실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계단절 상태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선정되었다가도 탈락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 편협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나의 행적으로서가 아니라 '나' 개인으로 증명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5) 사례 5

○ 부 또는 모의 인지가 된 경우, 혹은 이혼 한부모의 경우 비친권자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아주 쉽게 바로 뗄 수 있다. 이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비롯한 해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거 아닌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5가지의 증명서에는 모두 최상단에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나온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등록기준지는 호주제 하에서의 본적과 같은 개념으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비친권자(부) 또는 비양육권자(부)의 본적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 관할구청에서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현주소지로 변경할 경우 거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굳이 변경하려면 아무 상관없는 주소지로 변경을 해야 하므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비친권자 또는 비양육권자의 본적지(조부의 본적지 포함)를 등록기준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등록기준지가 본적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비친권자나 직계혈족이 아주 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6) 사례 6

○ 부모의 이혼이나 미혼사실이 기본증명서에 드러난다. 기본증명서는 최소한의 신상정보가 담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미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친권자지정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므로 문제가 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언제 어떻게 이혼하였는지가 다 드러난다. 부모가 미혼인 경우엔 부모가 미혼이고, 부모의 인지가 있었는지 스스로 인지하였는지 재판을 통해서 인지하였는지, 친권자는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지정판결을 받았으며 성씨는 변경하였는지 등의 내용이 줄줄이 붙어서 기재된다. 부모의 이혼이나 미혼사실에 대해 자녀 자신이 아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에까지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친권은 성년이 된 후에는 의미도 없고 증명을 요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개인의 기본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나친 정보공개로 전혀 기본적이지 않다. 미성년의 경우 친권자를 알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때에는 필요할 때에만 해당 내용을 증명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친권자 지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친권자의 본적과 호주가 상세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 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5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본적, 호주라는 용어가 공식 문서에 기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본적에 대해서도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조차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례 5의 경우와 같은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식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회적 인식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온라인 어학사전에서도 등록기준지에 대한 정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예시 1 : 기본증명서 일부 (협의이혼 한부모의 자녀)**

일반등록사항

구 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신고관서] [송부일] [송부자] [처리관서]
친권	[친권자지정협의일] [친권자] 모 [모의**본적**] **호주** [신고일] [신고인] [송부일] [송부자]

*** 예시 2 : 기본증명서 일부 (인지판결 받은 미혼모의 자녀)**

일반등록사항

구 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신고관서] [송부일] [송부자] [처리관서]
인지	[인지판결확정일] [판결법원] [인지자] [인지자의주민등록번호] [신고일] [신고인] [처리관서]
기타	[정정일] [정정내용]
친권	[부의인지재판에따른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판결법원] [친권자모] [친권자모의주민등록번호] [신고일] [신고인] [처리관서]
친권	[종료일] [종료사유] 미성년자의 성년 [직권기재서작성일] [직권기재일]

7) 사례 7

○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개인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분류 예시표'에 의하면 개인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정보

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혼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기록을 활용하면 된다. 아주 드문 용도의 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혼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

○ 미혼 한부모의 경우 정부를 비롯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사항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재혼-이혼 등의 모든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예시 3 : 혼인관계증명서 일부 (협의이혼 시)**

혼인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구 분	상 세 내 용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배우자] [친가**본적**] **호주** [송부일] [송부자]

*** 예시 4 : 혼인관계증명서 일부 (미혼 시)**

혼인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구 분	상 세 내 용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8) 사례 8

○ 2011년 12월 30일부터 일부사항증명서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사항만을 표기하는 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나온다. 취업 시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위해 일부사항증명서를 떼었는데, 회사 측에서 일부사항만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떼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일부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를 '기본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말로 바꾼다고 해도 특별한 문서로 인식되는 표기가 붙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

*** 예시 5 : 혼인관계증명서 (일부사항)**

혼 인 관 계 증 명 서(일 부 사 항)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여인(朴女人)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여	密陽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신고일] 2008년 02월 01일 [배우자] 박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680202-2345678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 혼인관계증명서(일부사항)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에 대한 증명서이므로, 기록사항 전부에 대하여는 그 전부가 반영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9) 사례 9

○ 성전환수술을 한 여성 트렌스젠더의 경우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것으로 인해 성전환수술을 하였음에도 기본증명서를 비롯한 기타 증명서에 남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변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성별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미비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2. 통합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1) 무분별한 신분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한 제한

○ 정부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기업, 학교에서의 증명서 제출 요구 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거부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증명서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발급 제한하는 시스템 도입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록은 모두 기본적인 개인의 현재의 상황만이 발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위임의 경우 엄격하게 대리인 확인) 철저한 확인 후 발급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발급에 있어서 주민등록등초본과 비슷하게 변경내역, 변동사항 등 개인이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사항만 알 수 있게 기재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에서 역시 전부사항 또는 일부사항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사항 발급 시 '일부사항'이라고 표기되므로 일부사항만 발급하는 것의 의미가 없다. 주민등록등초본과 마찬가지로 포함 및 미포함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외에 더 세밀한 선택 구분 후, 그에 대한 선택 표기 문구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인터넷 상에서 선택

체크할 수 있도록 할 때 초기지정상태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미포함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법률 명칭의 변경

○ 법률 명칭부터 '가족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신분증명제도 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담아내고 있지도 못하므로 '신분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가칭)' 정도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4) '본'의 삭제

○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도 폐지된 상황에서 '본'은 더 이상 법률적인 의미가 없다. 부계혈통의 가족의식을 유지하거나 심어줄 뿐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5) 발급처 및 발급비용에 대한 문제제기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무료발급(수급자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직원을 통한 창구발급은 400원이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의 경우 우편으로 받아볼 수가 있고 동, 시(도)청, 읍(면)사무소에서 직원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발급비용은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시작되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프린터기 기종이나 네트워크(공유) 상태 등에 따라 발급이 매우 제한적이다. 보안을 필수 전제로 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는 아직까지 영문 발급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하여 영문이 필요한 경우는 번역을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고 건당 25,000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Ⅱ.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3. 5. 9
발 의 자 : 남인순·김기준·최원식
장하나·서기호·이미경
박홍근·이학영·김상희
박영선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 아닌 부모자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 또한 그 명칭상으로도 혼란이 있고 한부모(미혼부모)가정이나 입양부모(위탁부모 또는 입양부모)가정 등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족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신분상 정보공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변경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가 아닌 증명서의 일부(기초사항증명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어 공개되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 사망 후 법적 상속인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나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15조의2에 규정된 기초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배우자, 자녀의"를 "자녀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성인이 된 친양자에 대하여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모자관계증명서

② 신청인의 청구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발급은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초사항증명서의 기록사항 등) ① 제15조제2항의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기초사항증명서"라고 한다)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된 증명서를 말한다.

1. 부모자관계증명서
   가.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나. 사망한 자녀
2. 기본증명서
   가. 기아발견
   나. 인지

다. 친권. 후견
라. 실종선고취소
마. 국적취득
바. 성. 본 창설 및 변경
사. 개명
아. 가족관계등록창설

3. 혼인관계증명서
가. 혼인취소
나. 이혼
다. 사망한 배우자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입양취소
나. 파양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친양자입양취소
나. 친양자파양

② 기초사항증명서에는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제목 이외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아니하며, 정정이력사항 및 제1항 각호의 기록을 모두 포함한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부증명이라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명서의 교부 등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82조의5, 제408조의9 및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사외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사망 후 법정 상속인은제 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나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15조의2에 규정된 기초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자관계증명서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자녀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주민등록번호(성인이 된 친양자에 대하여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의 청구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발급은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기초사항증명서의 기록사항 등) ① 제15조제2항의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기초사항증명서"라고 한다)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된 증명서를 말한다. 1. 부모자관계증명서 가.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나. 사망한 자녀 2. 기본증명서 가. 기아발견 나. 인지 다. 친권, 후견 라. 실종선고취소 마. 국적취득 바. 성, 본 창설 및 변경 사. 개명 아. 가족관계등록창설 3. 혼인관계증명서 가. 혼인취소 나. 이혼 다. 사망한 배우자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입양취소 나. 파양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친양자입양취소 나. 친양자파양 ② 기초사항증명서에는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제목 이외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아니하며, 정정이력사항 및 제1항 각호의 기록을 모두 포함한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부증명이라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서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개인의 의지나 요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신분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가 기재되는 부분이라든지, 인지(부모의 미혼사실과 인지방식 등 노출), 친권(부모의 이혼사실과 이혼절차 등 노출), 성·본 창설 및 변경(사유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입양이나 파양,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 전배우자에 관한 정보 등이 모두 기재됨으로써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혼인 외의 자녀가 기록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특례법 상에서의 미혼모의 비밀보장과도 연동되는 부분으로서 이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부터 일부사항증명서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사항만을 표기하는 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미비 등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조차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어렵게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붙어 발급되기 때문에 전부사항증명서가 재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사항증명서를 보완하여 정정이력사항이나 과거변동사항 등을 제외한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 등의 특별한 필요에 의한 본인

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전부사항을 발급하도록 한다면 원하지 않는 과도한 정보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정비해야 하며, 증명서 교부 신청자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의 공시내용 제한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만을 표기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에 맞도록 발의(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바라는 바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하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명칭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인의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을 표시(형제자매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의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의 명칭부터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무분별한 신분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한 것으로써, 정부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기업, 학교에서의 증명서 제출 요구 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거부할 수 있거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의 증명서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에 우리사회 전반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노력 없이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번 일부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 **개정안 제안이유**

- 출생신고 후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두려움(양육 미혼모와 입양 미혼모 공통)으로 인한 아동 유기를 방지하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와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 조화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 '기초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원칙 수립

- 가족관계등록 원부에 모든 신상정보를 기록·관리하되 일상생활에서 통상 증명이 필요한 '기초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특별히 '전부'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기초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고자 함. 이때 '기초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에는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사항'에 관한 증명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증명서 교부 신청자의 제한

- '전부'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및 사망 후 법적 상속인만 교부 신청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사생활 보호

▸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 정비

-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바꾸어 증명서 상의 개재 사항과 제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정비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의 공시내용 제한

-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의 친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

2013. 5. 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전국여성법무사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가나다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문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들어가며

지난 5월 9일 발의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은 아직까지 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개정 사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핵심적 취지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신분상 정보공개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였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원치 않는 정보노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2009년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오히려 '일부증명'이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편견'으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괴로운' 지경이 되었다.

'정상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사실 그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시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다. 그렇기에 제도적 보완 외에 가족형태, 성별, 정보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신 김상용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견에 공감하는 바 크다. 사족일 수 있으나, 몇 가지 고민을 덧붙여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2. 명칭의 문제

명칭은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사용하는 명칭 일부가 편견의 양산, 실체와의 불합치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1) 남윤인순 의원 등 10명, 이하 개정안이라 칭함.

1) 일부사항증명서

일부사항증명서가 갖는 명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표자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였고, 개정안에서는 증명서와 전부증명서로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모두 현재의 신분사항을 중심으로 공시하자는 것인데, 개정안의 경우, '기초', '일반' 등의 부기를 삭제하여 전부증명 요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의 무분별한 전부증명서 요청의 관행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제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이미 지적된 대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으며, 재혼가족에게 차별적이라는 면에서 그 명칭의 변경이 제안되었다. 현행 가족관계증명서가 증명하는 것이 실체적으로는 '가족'의 일부이기에 이를 반영한 것인데, 발표자는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로, 개정안에서는 '부모자관계증명서'로 제안하였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한다는 개정방향의 취지를 감안하면, 부부관계 및 양부모관계는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로 공시될 수 있으므로 '친자관계증명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제779조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증명하고 있는 '가족'관계들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를 다 포괄하지 못한 채, '일부 가족'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칭의 명확한 사용을 위해 본 법률의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무렵,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으로 발의된 법률명[2] 등을 참조하여, '신분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해 본다.

---

2)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5)',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5)',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2006)'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공시 문제

발표자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촉발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논쟁을 상당히 다루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친생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양부모도 친양자 입양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친양자에 대하여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보다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양부모도 친생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하여 형평에 있어 일리가 있는 제안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부모(사실상 친생모)의 사생활 보호가 소위 '비정상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과도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언급한 "홀로 하는 출산"이 아닌 "사회적으로 동반하는 출산"을 눈여겨보며, 근본적 문제해결에 안일한 우리 사회의 무능력을 다시 한 번 읽었다. 그런 면에서 공시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조정 혹은 타협은 부차적 문제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며, 또 다른 권리당사자를 고려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제 폐지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 당시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 당시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국적변동사항의 통보,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주지하다시피 호주제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단순한 신분등록 및 공시에 대한 변경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른 엄청난 변화였다. 그러나 '본'의 기재와 등록기준지에 부계중심의 신분등록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상 법률상 의미를 잃은 지 오래인 '본'의 기재가 갖는 의미심장함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호적에서 이기된 등록기준지의 단순함은 간과하기엔 지나친 문제다.

5. 마치며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자체가 많은 질문을 던지는 법이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신분의 변동사항의 어디까지를 그리고 왜 국가가 관리·감독해야 하는가(/할 수 있는가), 가족형태를 둘러싼 차별과 편견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사생활보호인가, (아직 이 걱정을 할 단계는 한참 아니지만) 혹 사생활보호가 편견에 맞서는 힘을 약화시키지는 않는가. 그런 면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망라하며 우리 삶의 양태를 가장 가까이서 반영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누구든 가족형태에 따라, 과거의 이력에 따라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진부한 선언이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선언이기도 하다. 제도적 정비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므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디더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더딤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논의내용을 포함하여 더욱 세심하게 인권을 살피는 개선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 실현되기를 바란다.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토론문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1.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과정에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 방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안,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 주민등록 일원화 등이 논의되었고, 법안 명칭에 있어서도 ‘신분’관계등록으로 할 것인지 ‘가족’관계등록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채택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신분등록제도는 1인 1적제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편제방식을 택하면서 목적별 편제방식이 가미되어있으며,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단위별 편제 방식까지 혼합되어 있다.

1인 1적제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편제방식을 기본으로 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으정해진 법의 명칭이라든가 현실적인 가족을 담아내지 못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및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시행 직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개정 논의들이 있어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 주체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규정함으로써 전부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청구주체가 비교적 넓다는 점과 공개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혼인 외 또는 전혼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인지, 친권, 성·본 창설 및 변경, 입양이나 파양,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 전배우자에 관한 정보 등이 모두 기재됨으로써 본인이 원하지 아니함에도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논란이 있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2011년 12월 30일부터 일부사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과거의 신분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큰 기록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사항만을 표기하는 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부사항'이라는 표기가 붙어 발급되기 때문에 전부사항증명서가 재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취지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상담사례(2013.7.)
>
> 30여년전 사실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헤어지면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고, 이후 아이 소식은 들은 바 없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고 큰아이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증명서에 전혼자녀가 기재된 것을 보고 놀라 상담 후 일부사항 증명서를 떼보았으나 거기엔 일부사항증명 표기가 되어있어 소용없었다. 내가 아이를 출산했던 사실은 남편과 아이들 모두 모르는 일인데 이제 와 알게 되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되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구별하여야 하고, 개인의 신분관계가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도 함께 고려하여,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제발표문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관계증명서는 발급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거의 변동 사항까지 표시하는 증명서의 발급은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문에서 제안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1)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이다. 민법상 가족의 개념[1]과도 불일

1) 민법 제 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로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법상 가족의 개념 역시 현실의 가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치하면서 현실의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가족은 법률혼으로 성립된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부부 혹은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고 따라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제도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를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입법례상으로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그 존재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3.5.9. 국회에서 발의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윤인순 의원 대표 발의, 이하 "개정법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 이를 "부모자 관계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발표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을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상세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가 표시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일반증명서에는 부 또는 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표시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형태는 유지하되 명칭이 바뀌고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기록은 삭제되는 것인가 싶고, 결국 논란이 많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공시하도록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부부에 관한 증명은 혼인관계증명서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고, 현재 민법상 일반 입양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로 기재되고 있는데 친자관계증명서로 발급될 경우 양친자관계를 친자관계증명서로 발급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부 및 친자관계증명서"로 바꾸고 친자관계 증명에는 일반증명서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나 가족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은 개인적 경험으로 이혼, 부양, 상속, 친자, 친권 등 가족법 전 영역에 관해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 등을 할 때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하나의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일거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또한 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의료보험 신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필요로는 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는 행정적 편의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대체방안은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폐지내지 대체 여부수순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제발표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으로 현행법에 따른 증명서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발급하도록 하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상태만이 나타나도록 하며, 과거의 변동사항은 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위의 개정법안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없는 한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개정법안 제15조 제2항), 기초사항증명서로 명명할 경우 전부사항증명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결국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란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기초사항증명서" 보다는 "일반증명서"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한편 발표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상세증명서는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발급청구권자와 별도로 제출요구에 대한 제한을 법에 규정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제출할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반증명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독일신분등록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사항 증명서는 발급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출생신고와 미혼모의 익명성 보장과 관련하여 현재는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단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그 아이를 미혼모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해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2]. 그럼에도 미혼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입양이 안

---

2) **입양특례법**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①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란에서 입양된 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

될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로 기록된 것이 남아 있다는 점과 또 입양이 되더라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로 기록되는 점 등일 것이다. 미혼모의 입양에 관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출산기록이 어떤 형태로든 남게 된다는 것은 미혼모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고 이것은 자칫 돌발적인 행동을 빚게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처하게 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는 국가의 공적장부에 기록은 남되 미혼모 본인이 원할 경우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발표문에서는 친생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대한 공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토론자 역시 이 방법에 찬성하지만, 이 경우 입양인의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상담사례(2012.11)

장애아를 낳은 미혼모입니다. 장애아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입양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입양이 된 후에야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에 대한 기재 사실이 삭제 된다고 합니다. 입양이 안 되면 자녀가 평생 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따라 다닐 것이고, 설사 입양을 보냈더라도 파양이 되면 다시 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자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 마음이 아프지만 어차피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고 결국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자녀의 입양을 위탁하며 모든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양취소나 파양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부활하여 기록되기 보다는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말소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제8조의 친양자 파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양사유를 기록하고 파양된 자녀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부활 기록하여야 하며, 파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발표문의 익명출산법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1) 독일에서 익명출산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산모가 익명일 경우 의료보험이나 출산지원 등에 있어 국가적 관리나 동일인 확인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2) 친생모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별도의 봉투에 넣어 보존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안하는지, 국가기관이라 함은 주무부서가 어디로 되는지.
3) 프랑스는 민법에서 소위 X출산을 규정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법의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동 법에 임신할 때부터 익명으로 상담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4) 익명출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등이다.

3. 추가검토사안

1) 등록기준지 및 본 삭제의 필요성

등록기준지에 관해서는 호주제 폐지 당시부터 본적에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 되어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관리를 위한 기준지로서 반드시 등록기준지란 개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전의 본적에서 이기된 곳을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쓰고 있으며, 이를 본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호주제의 잔재를 정리하는 측면에서도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거나 기술상 필요하다면 적정한 개념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과 본이 같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 본은 남계혈통, 부계혈통 중심의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3].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은 민법의 절차법으로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란 조항을 비롯하여 민법상 성(姓)과 관련된 규정에는 성과 본을 같이 쓰고 있어 함께 민법 제 781조 제1항의 개정과 함께 민법에서 먼저 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해서도

3) 이에 대해 이산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본과 본적 및 호주에 국한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본 이외에 본적과 호주가 사라진 개인별 편제에서 폐지된 호적과의 연결점을 두지 않는 것은 혈연관계의 추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문흥안,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327면) 같은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는 등록기준지의 폐지에도 반대한다.

주제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母의 신분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혼인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父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

> 상담사례(2013.6)
>
> 동거녀와 다툼이 심했는데 아이를 출산한 직후 집을 나가 버렸다. 결혼할 생각이 있었지만 아이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 정도인데 가출 후 핸드폰 번호도 바꾸어버려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하니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하였다. 아이양육문제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혼인외 출생자의 모의 신분사항이 불명인 경우 출생신고를 생부가 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여 자녀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 받은 후(가사소송법 제44조),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성본 창설과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한다(동법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또한 법원에서 창설허가를 받은 후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서에 1월 이내에 등록창설신고를 하고(동법 제101조),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함으로써(동법 제55조)[4]

---

4) **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모가 하고 부는 인지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가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 인지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는 출생사실의 유무 뿐 아니라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으로 출생신고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 6. 30. 가족관계등록과-1892 질의회답)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9호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비로소 자녀에 출생신고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이는 결국 자녀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 요건하에서는 모의 신분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 혼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3) 혼인외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합의가 없는 한 父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문제

> 상담사례(2013.6)
>
> 미혼모인데 내 성을 따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인지청구를 하였는데 판결을 받고 신고를 하니 아이의 성과 본이 친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이가 쓰던 성을 계속 쓰기 원하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또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한다. 판사와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한 것인지 화만 난다.

위 사안은 민법과 관련[5]되나 그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외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 어려움

상담사례(2013. 8)

-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동거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 전남편과의 이혼절차를 마친 후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도 하였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남편의 친자로 추정을 받는다며 출생신고 후 재판을 통해서야만 지금의 남편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 될 수 있다고 한다.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밝혀졌는데,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바로 남편의 자식으로 올릴 수 없는지?
- 외국인여성과 1년전 집을 나갔다. 소식을 알 수 없는데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가 내 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내자식도 아닌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는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夫의 子로 추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선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률상 부와 실제의 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 민법 제844조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같은 친생자추정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민법 제84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상 부, 즉 모의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재차 혼인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6].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당사자들의 행복과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타당한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더욱이 전남편이 알게 될 두려움, 절차의 복잡함,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들도 적지

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1호**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않고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는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등록부상 부와 생부 누구에 대해서도 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각종의 사회보장급여를 비롯하여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의 권리나 혜택을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의 검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부(夫)의 자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와 같이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4. 나가며

최근 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 유학생이 성이 유씨로 개재된 여권의 영문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류씨로 되어 있어 재발급이 안된다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상담을 온 일이 있다. 그동안 류씨에서 유씨로 다시 류씨로 성의 기재가 변경되어 왔다는 것이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세 차례나 성에 대한 표기를 바꾸어 개인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면 되겠냐는 항변이었다. 또 오래전에는 부친이 친생자존부관계확인 판결로 성이 바뀌자 성인자녀들과 학교에 다니는 손자들까지 모두 성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공무원의 억울한 호소를 접한 일 있다. 자칫 간단히 보일 수 있는 연령정정이란 문제에 일생을 거는 분들도 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절차법이라고는 하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그 개정에 있어 국민들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양성평등하며 인격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무심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Ⅰ. 들어가며

얼마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한모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중 하나로 자녀양육비 이행청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모두 한부모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강의 중 남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행 일부사항증명서로 되어 있는 증명서 형태의 발급을 일반적인 것으로 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은 공시를 제한하여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그 설명을 하는 순간 수강하시는 분들은 탄성과 함께 열렬한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그동안 한부모가족들이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노출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제도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제도가 이렇게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과연 이러한 개인들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공시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와 당위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가 개정안을 포함한 그간의 논의를 좀더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Ⅱ.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의 현황

1.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개편

호주제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과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호주제 존속 당시에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국가의 공적장부로

호적이 있었으며 신분관계의 공시를 위하여 호적등본을 발급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호주제 폐지와 함께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공적장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재되었고 신분관계의 공시는 5종의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진일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家)에 편재된 모든 구성원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노출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호주승계순위가 남성에 비해 후순위였으므로 일가창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 오빠, 남동생의 호적에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어 남성혈족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신분관계증명서류에 여성의 신분사항이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카가 학교에 호적등본을 제출하는데 거기에 고모인 여성의 이혼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관계가 공시되는 범위가 가족단위로 되어 있어 하나의 서류에 같이 포함되어 공시되는 사람이 많았으며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 신분사항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록하였으므로 호적등본 하나만을 보아도 호주와 가족의 신분관계의 일대기가 모두 드러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적제로 편재되어 같이 공시되는 사람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5종의 증명서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신분관계에 대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진일보를 이루었습니다.

2. 과거 이력 및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공개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 신분관계의 공시가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진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취약한 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하게 되어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규칙 제21조 제7항), 발급 당시의 상태만 나타나며 과거의 사항은 표시되지 않게 되지만 그 외 증명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

으므로 과거의 신분사항에 대한 이력이 여과없이 공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전의 혼인, 이혼등의 이력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혼인, 이혼과 관련된 내용은 사생활에 관계된 내용이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개명을 한 경우라면 개명전의 이름, 성별정정을 하였다면 성별정정한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개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이름을 바꾼 것인데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름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계속 드러난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할 일일 것입니다. 성별정정의 경우도 이전에 다른 성이었다는 사실은 구태여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또 한부모가족들이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친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혼 또는 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 단독친권자 지정을 하고 또 친권자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어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부모의 이혼, 또는 인지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성이 다른 자녀가 모두 기재되거나 혼외자가 기재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 증명서에 과거의 이력과 사생활에 치명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겪는 어려움의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증명서의 행정업무, 사인간의 거래 등 일상적인 광범위한 이용

이러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증명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가족(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별거가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또한 출생일시, 사망일시의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가족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녀의 전학, 예금해약, 보험계약, 해약 등 자녀의 법적 권리가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4. 증명서의 일상적인 사용, 개인의 사생활의 치명적인 침해 간의 부조화

문제는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증명서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불필요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에는 치명적인 내용들이 여과되지 않고 같이 공시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개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5. 일부사항증명서의 도입 – 낮은 활용도

이런 의미에서 2009년 말에 도입된 일부사항증명서는 과거의 이력 및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내용들을 공시에서 배제하는 증명서 형태를 도입한 것으로 위와 같은 협실의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입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현실에서 일부사항 증명서의 활동도는 매우 낮습니다. 일단 일부사항증명서제도의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활용이 낮은 측면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명칭이 일부사항증명서로 표기되어 있을뿐더러 증명서 하단에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OO관계등록사항 중 일부사항에 대한 증명서이므로 기록사항 전부에 대하여는 그 전부가 반영된 OO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관공서 등의 업무처리 기관에서 수령을 꺼려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Ⅲ. 개선방향

1. 목적에 맞는 증명서의 적절한 사용

(1) 일상적인 업무

위에서 쓴 바와 같이 행정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개인의 신분관계에 대한 과거이력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합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현재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도 업무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과거 이력과 개인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적인 내용들이 배제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신분관계의 정확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① 혼인

혼인은 남녀간의 신뢰에 기초하여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인 만큼 신분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요구됩니다. 물론 혼인을 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지만 혼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분관계의 확인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장부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혼인의 전단계인 약혼시에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 각 호의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부 또는 전부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나, 준비하여 교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신분관계의 확인을 공적장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서는 과거의 이력 및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형태가 이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의 신분사항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증명서의 열람, 발급주체는

현행 제도상으로도 아직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혼인상대방 측이 아닌 본인 측이 될 것이며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증명서의 열람, 발급주체는 일부사항증명서 형태와 구별하여 본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상속**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제도는 민법의 규정으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법정상속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신분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속은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여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은 개시되므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친부모의 사망 이후에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자의 기록이 말소되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야만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는데 꼭 필요한 서면이 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증명서를 기본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까지 확인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게 되는데 피상속인은 망자이므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살아 있는 사람에 비해 경감되며 상속인들간의 이해관계를 법규정에 맞게 적용시킬 요구가 크게 대두되므로 상속의 경우에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분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록된 증명서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일부사항증명서의 명칭 및 형식의 변화

목적에 맞게 증명서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사항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쓴바와 같이 일부사항증명서는 명칭에 있어서 일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로써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증명서 하단에 일부사항에 대한 것일 뿐이라는 매우 상세한 설명문구가 들어 있어 그러한 인상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사항 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

지만 일부가 기재되었다고 하여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증명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명칭과 형식의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과 형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는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증명서의 제목 이외에는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과거의 이력 및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 증명서는 전부증명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부사항증명서에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만 표기를 하자는 안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현재의 일부사항증명서가 기본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중에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증명서 형태가 아예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관공서업무 처리과정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은 없지만 사인간의 신분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오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증명서 형태를 구분하여 적절한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구분이 기록사항에 대한 공개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일부와 전부를 나누기보다는, 증명서의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용도인지, 신분관계의 상세한 확인을 위한 용도인지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님도 증명서의 명칭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제안을 하신 것을 보니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일부사항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그리고 신분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명칭을 정하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가 현행 일부사항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형식에 있어서도 증명서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설명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열람, 발급 주체의 제한 -정보공개의 결정권을 본인에게 부여

또한 현재 각종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일반증명서의 경우는 이렇게 발급권자를 정해도 무방하지만 상세증명서의 경우는 본인이 공개를 꺼리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발급권자를

본인으로 제한하여 정보공개의 결정권을 본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Ⅳ.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변화

또한 개정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기재되게 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며, 형제자매가 빠져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을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친자관계증명서라는 명칭도 검토하였으나 그 경우에는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양자관계를 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을 바꾸고 증명서의 내용에서 배우자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상속인의 순위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부모와 자녀, 배우자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짓기에 매우 유용한 증명서의 형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의견이 우려하는 바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Ⅴ. 출생신고와 미혼모 정보의 공시제한

1. 출생신고

얼마전 입양특례법 개정을 둘러싸고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마치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

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기관의 장, 또는 사회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출생신고는 친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당연히 친부모가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기아인 것처럼, 또는 입양을 친자로 출생신고하였던 것은 법규정에 어긋나는 탈법적인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이 탈법적인 관행을 막고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여 입양절차에서의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던 친부모의 동의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절차에서의 친부모의 동의권과 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서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친부모의 출생신고를 배제하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을 국가가 관리하게 될 뿐더러 입양절차에서 친부모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출생신고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 들어 있는 것은 입양절차에서의 친부모의 동의권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은 입양절차에서의 결정과정에서 친부모를 배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장이 결정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미혼모가 혼외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영아를 유기하는 사태는 그 해결책을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서 찾을 문제가 아니고 친부모의 출생신고 자체는 유지하여 입양절차에서의 동의권을 보장하되, 이와는 별개로 미혼모의 혼외자 기록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2. 공시의 제한

구체적으로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입양특례법 제14조)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이루어지면 아동은 친양자처럼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관계등록절차로 넘어오게 되면 친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보낸 아동의 기록이 말소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아동의 기록이 남게 되며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자와 동일하게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친양자로 입양한 아동이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친자관계기록은 입양이 이루어지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는 않게 됩니다. 친양자관계입양증명서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장 발급과 열람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서류이며 입양된 당사자라 하더라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발급, 열람할 수 없으며 본인 이외에는 쉽게 발급,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미혼모의 출산기록은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남게 되므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 의하면 가장 당사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요구를 받으면 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입양특례법 제 36조) 입양당사자가 성인이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규정과 충돌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친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의 공시를 제한하고 친부모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 인적사항을 공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님은 한걸음 더 나아가 친생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치 친양자입양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기록이 없는 증명서를 발급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는데, 이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그려해 볼 때 숙고할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되며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Ⅵ. 맺으며

우리사회는 그동안 신분관계의 공시와 관련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국가의 신분관계의 공시제도가 가지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개인이 공개를 꺼리는, 그리고 공개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들이 별다른 필요성도 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자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상황일 수 있으며 우리의 자그마한 관심으로 이러

한 상황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개인의 사생활 노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의 상황개선을 위하여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장준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인 쇄 | 2013년 8월
| 발 행 | 2013년 8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38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65-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